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항공교통이용자 정보보호 및 침해사고 시 통지의무 신설〉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15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중 수

목 차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2212415)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시 통지의무 신설(안 제64조의2 신설)	3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22124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8. 27.
3. 회 부 일 : 2025.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사 직원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유명인의 항공편, 좌석 위치 등의 정보를 유출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된 정보를 스톡킹 등에 활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거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 및 제84조제2항제20호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시 통지의무 신설(안 제 64조의2 신설)

개정안은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64조의2(항공교통이용자 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항공사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u>
제8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

현행	개정안
1. ~ 20의3. (생략) <u><신설></u>	1. ~ 20의3. (현행과 같음) <u>20의4. 제6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u> <u>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침해사고를</u> <u>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지</u> <u>아니한 자</u>
21. ~ 24. (생략) ③·④ (생략)	21. ~ 2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권 예약정보를 불법으로 구입하여 연예인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근접 접촉을 시도하는 스토킹을 하거나 공항에서 대기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¹⁾²⁾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연예인들의 항공권 정보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항공 정보의 불법 유출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음.³⁾

1) KBS 뉴스, 「“BTS 좌석 알려줄게”...연예인 항공권 정보 판 외항사 직원 탈미」, 2025.2.26.

2) 연합뉴스, 「“아이돌 공항 도착 정보 팔니다”...연예인 항공권 정보 거래 여전」, 2024.8.18.

3) 제22대국회 2025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025.10.27.

이에 개정안은 ①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② 항공교통이용자⁴⁾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항공사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③통지의무 및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항공교통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36. “항공교통이용자”란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첫째,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두 법률 간의 관계, 제도의 중복·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조화될 것을 요청하고 있음.⁵⁾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⁶⁾

5)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⁷⁾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

7)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①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민감정보⁸⁾ 또는 고유식별정보⁹⁾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이와 달리 개정안은 별도의 기준 없이 항공교통이용자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유출 등이 발생한 개인정보의 성격, 피해규모, 유출양상 등에 관계없이 통지의무가 발생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하여야 할 것임.

항공교통 관련 주무부처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신속히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과 함께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통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중요 사안인 경우 각 개별 기관에 중복 신고하게 되어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료제출 및 검사 의무¹⁰⁾를 각 기관별로 중복 이행해야하는

8)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9)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10)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저해될 우려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¹¹⁾ 각 개별법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입법례도 일부 존재하나, 「의료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한해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전자의무기록은 질병정보,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높고, 금융정보는 카드 비밀번호·보안코드 등의 유출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 각 분야의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별법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입법례 】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 (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개정안의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중복 규제의 소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64조의2는 ‘항공교통이용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¹²⁾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항공교통이용자 정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개념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64조의2제2항에서 이용자 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 침해 사고 발생 시 이를 통지하고 공개할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통지 및 신고 의무¹³⁾와 유사하나, 통지·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¹⁴⁾ 유사한 위반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8.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행위에 대해 두 규정에 따른 중복 제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안 제84조제2항은 제6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통지의무 및 공개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¹⁵⁾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이용자 권익 보호와 항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강화 측면에서의 정보보호 의무 부여, 사고 발생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와 일정 조건 부합 시에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통지를 규정하고 있어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항공산업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통지하도록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통지의무는 이행하였으나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사 및 한국항공협회 의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 유출 시 통지와 신고의무를 이미 부여하고 있으며, 개정안 신설 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지대상 및 방법 등이 상이하여 업무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개별법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항공교통사업자만을 특정하여 항공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산업 간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